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기준

2024. 6. 25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이하 “절차”라 한다)에 따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이하 “광주전남본부”라 한다)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광주전남본부에 배정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원대상은 <별표1>에서 정한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서 정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후심사 자료제출)** 광주전남본부장은 절차 제5조에 따른 사후심사시 금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출금원장(사본)
2. 사업자등록증(명)(사본)
3. 금리산출표(사본)
4. 주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5. 지원대상업체 입증 서류(유관기관 인증서 및 추천서 등)
6. 기타 광주전남본부장이 요청한 서류

**제4조(평가관리 기준)** 절차 제6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금리 감면폭(40%)
2. 제출자료의 정확성(30%)
3. 제출기한 준수 여부(20%)
4. 기타 업무 협조도(10%)

**제5조(기타 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세칙」 및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절차」 등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6. 7.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 7. 1일(2016. 7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 기준에 따라 취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 7. 1일(2017.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7. 8. 3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9월 1일(2017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종전 기준에 따라 광주전남본부장이 부여한 금융기관별 사전한도는 2017년 12월 배정시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18. 12.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8.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8월 1일(2019년 10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19. 9. 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9월 1일(2019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1월 4일(2021년 3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6. 28.)**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7월 1일(2021년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9월 1일(2021년 11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  
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1. 2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2. 3일(2022. 4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  
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2. 6. 1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2. 7. 1일(2022. 9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  
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1. 2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 3. 2일(2023. 5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  
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3.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 4. 3일(2023. 6월 한도배정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금융기관 앞으로 배정된 중소기업 지원자금  
은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3. 8. 30.)**

이 기준은 2023. 9.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5항의 기준 개정은 2023. 1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2024. 6. 25.)**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의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

### 지원대상업체 지원부문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코드	지원대상	지원부문	선정기준 <sup>1)2)</sup>
A1	창업기업	일반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영업 개시후 3년 이내(단, 제조업의 경우 5년 이내)인 업체 제외대상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2. 도소매업(45~47), 수의업(731)을 영위하는 업체
A2	벤처기업	일반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서 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한 업체
A3	혁신기업	일반	-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 정부의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또는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을 획득한 업체 - 금융기관이 기술평가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동 기관이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를 여신심사자료로 활용하여 대출을 취급한 중소기업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등 국제규격 또는 품질인증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을 받은 기업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권소사업 참여업체 - 관·학계 및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업체
A4	녹색기업	일반	- 환경부 선정 녹색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한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의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생산업체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GR마크(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인증제품 생산업체 - 중소기업벤처부가 선정한 우수 Green-Biz 기업
A6	추천기업 <sup>3)</sup>	일반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 및 전남지역본부, 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가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대출취급은행 앞으로 추천한 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상 제조업(10~34)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가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A7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 <세부분류: 부표1 참조>	일반	- 음식료품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통신장비제조업, 조선산업, 디자인산업, 정보통신업, 관광산업 -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농림수산업자*·농어업법인** * 사업자등록증(명)상 한국표준산업분류표 01~03 업종이 포함된 업체 **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A8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후 1년이상 경과한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lt;세부분류:부표2 참조&g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금형산업, 자동차부품제조업, 광산업 및 관련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정보통신업, 의료관련 제조업, 차세대배터리 제조업</li> </ul> </li> <li>-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상법상 회사</li> <li>-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중 상법상 회사</li> <li>- 중소벤처기업부의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li> <li>- (사)한국공기산업진흥회가 인증한 공기산업관련 중소기업</li> <li>-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이 인증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중소기업</li> <li>※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이 아래와 같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배정시 우대 가능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일자리 창출 우수기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광주광역시 선정 일자리우수기업</li> <li>o 전라남도 선정 고용우수기업</li> <li>o 대출취급월 기준 직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대출취급월 기준 12개월전 대비 5인 이상 혹은 10% 이상(단, 종업원수 2명 이상 증가에 한함) 순증한 중소기업</li> </ul> </div> </li> </ul>
A9	전입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중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전용 산업 단지에 입주하여 생산·가동을 개시한 업체</li> <li>-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에서 광주전남지역으로 이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10~34)을 영위하는 중소기업</li> </ul>
A10	수출관련기업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서 선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li> </ul>
A11	소재·부품 생산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특화선도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li> <li>-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li> <li>-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li> </ul>
A13	농림수산업 관련 기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업체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1~03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농림수산업자·농어업법인* 포함)</li> <li>*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li> </ul>
A14	명절 및 재해 자금 등 필요기업 <sup>4)</sup>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절, 천재지변, 대형업체부도 등으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한국은행 광주전남 본부장이 특별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체</li> </ul>
A15	기타 지원기업 <sup>4)</sup>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정한 위기정후지역 소재 업체 중 광주·전남테크노파크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li> <li>- 기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이 특별히 인정한 업체</li> </ul>
A16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업종 영위기업	특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자체 선정한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 음식·숙박업(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li> <li>o 도소매업(45~47), 여행업(752), 운수업(49, 51~52) 단, 52915 주차장 운영업은 제외</li> <li>o 여가업(90~91). 단,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9112),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 무도장 운영업(91291)은 제외</li> </ul> </li> </ul>

- 주: 1) 지원대상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  
2) 금융기관의 대출실행일이 관련 인증 또는 계약 등의 유효기간 이내이어야 함.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증유효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유효함  
3) 유관기관 추천업체의 경우 업종별 자금지원 형평성, 광주전남본부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업체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4) 광주전남본부장이 지원비율·지원한도·지원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

### 지역특화산업 세부분류

업 종 별	대상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 10차 개정)		비 고
음식료품제조업	101 102 104 10742 10743 10792 11209	도축,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차류 가공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192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201 203 20412 20421 20493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학섬유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11 22212 22213 22222 22232 2225 2229	고무 타이어 및 튜브 생산업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폴리스티렌 발포, 기타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플라스틱 접착처리,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321 2322 23232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42 243	1차 비철금속 제조업 금속주조업	
통신장비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조선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포함)	
정보통신업	5821 5911 5912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방송통신업, 임대, 수리업 제외
디자인산업	7320	전문 디자인업	인테리어 디자인 제외
문화영상산업 관련 서비스업	90110 9019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영화관 제외
관광산업		「관광진흥법」제4조 ~ 제6조에 따라 지정,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고 아래의 관광사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 ○ 여행업(국외여행업 제외)      ○ 호텔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지역전략산업 세부분류

업종별	대상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 10차 개정)		비 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2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591 2592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전자부품 제조업	261 262 28111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전동기 제조업 중 가전용 모터 제조업	
금형산업	29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303 30400	자동차부품 제조업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의료관련 제조업	271 21	의료용 기기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5822 6201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차세대배터리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광산업 및 관련산업	빛을 만들고 제어하며,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소재, 부품, 기기 및 시스템 산업		
	범 위		주 요 품 목
	광통신	광미디어	광섬유
		광통신부품	광커넥터, ONU, 광증폭기, 송수신기
		광통신 시스템	광전송시스템, 광교환기
	광정보 기기	광기록 부품	광픽업, 광다이오드
		광기록 매체	MOD, DVD, CD-ROM
		광입출력 장치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
	광정밀 기기	레이저 발생기기	산업용 레이저, 레저용 레이저
		정밀기공	절단·용접기, 마킹, 반도체 가공기
		광계측기기	광센서, 광계측기기
	광원 응용	의료광학기기	레이저응용 치료기, 영상진단기
		광원	산업용 광원, 고효율 광원
		광변환기기	태양전지, CCD
	광소재	디스플레이 소자	LCD, FED, PDP, LED
광소재		렌즈재료, 광섬유재료, 광촉매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풍력에너지를 모아서 저장, 변환 및 사용처에 보내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 ○ 태양열온수기, 집열판, 축열탱크, 열교환기, 풍력발전기, 태양열발전, 풍력발전 등		



<별표2>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제외업종<sup>1)</sup>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제10차)
운송관련 서비스업	52915 주차장 운영업
주점업	5621 주점업(사업자등록증 상 주점업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호명에 '포차'·'대포'·'호프'·'바'·'맥주'·'비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 서비스업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855 일반 교습학원
보건업	86 보건업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2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 이용 및 미용업 96122 마사지업 96129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주: 1) 업체가 복수의 업종을 영위할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함